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1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7. 1.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: 2024. 7. 4.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4. 7. 17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자연휴양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객실 운영 및 관리자 예약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예비객실 운영 규정 신설(안 제6조2)
- 예약사고, 고장,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비객실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- 나. 관리자 예약 규정 신설(안 제6조3)
- 관리자 권한 근거 및 통제방안 마련
- 다.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추가(별표 2)
- 수급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: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

-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반영(수급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)
[복지지원과-19218호(2024. 5. 10.)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: 별표 2	<input type="checkbox"/> [별표 2]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(제8조 관련)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수급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	<input type="checkbox"/> [별표 2]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기준에 수급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여 반영하고자 함.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

(1) 고성군 공고 제2024-752호 { 2024. 4. 22. ~ 2024. 5. 13.(20일간) }

(2) 고성군 공고 제2024-939호 { 2024. 5. 23. ~ 2024. 6. 13.(21일간) } *

*재입법 예고: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으로 재입법 예고함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비객실 운영과 이에 관련된 관리자 통제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

하고,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6조의2) 예비객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오류 및 고장 등에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6조의3)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으로, 안 제6조의2에 따라 예비객실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이에 관련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별표 2)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수급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: 없음

9. 심사결과: 2024. 7. 17.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